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신자 :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경유)
제 목 : 심사지침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 지침 제430호('24.7.18.시행) 「심사지침 설정 등에 관한 지침」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심사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원 홈페이지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소식 → 공지사항」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타 → 공지사항」

붙임 공고 제2024-210호 심사지침1부. 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수신자

결재	담당 김다솜	팀장 김영	부장 권지은	실장	전결09/13 최금희
----	--------	-------	--------	----	----------------

협조

시행 기준운영부-2461 (2024.09.13.) 접수 ()
우 264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 www.hira.or.kr
전화 033-739-4734 전송 033-811-7457 / cupidinai@hira.or.kr / 비공개(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 2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 신설·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한다.

심사지침 제 · 개정사항

□ 심사지침 신설 (총 1항목)

○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 목	제 목	내 용
다 245 - 1 Cone Beam 전산화단층 영상진단	측 두 골 에 시 행 하 는 다 245 - 1 Cone Beam 전산화단층 영상진단의 적용기준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급여 기준」 중 측두골은 방사선일반영상진단에서 정보를 얻기 어려우므로, 제3장제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이 없는 경우에도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 영상진단을 인정함.

□ 심사지침 개정 (총 5항목)

○ 제6장 마취료

항 목	제 목	내 용
바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 경추간공 차단	바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 경추간공차단 (Transforaminal Epidural Block)시 영상자료의 세부적용 기준	<p>바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경추간공 차단(Transforaminal Epidural Block)시에는 영상자료에서 다음 소견이 확인되어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가. 주사바늘 끝(Needle tip)은 정면 상에서 추간공 안쪽에, 측면 상에서 전경막외강(anterior epidural space)에 위치해야 함</p> <p>나. 조영제는 정면 상에서 시술부위(level) 주위의 경막외강에, 측면 상에서 전경막외강(anterior epidural space)내에 퍼짐이 확인되어야 함.</p>

항 목	제 목	내 용
		다. 상기 가 또는 나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 시에 사례별로 인정함.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제 목	내 용
자46 척추고정술	척추경나사 (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중 「방출성(불안정성) 척추 골절」의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의 측정 방법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중 가. 2) 방출성(불안정성) 척추골절 시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기로 함. - 다 음 - 가. 후만각은 일반 방사선 측면영상(plain X-ray lateral view)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Cobb’ s 방법에 의한 후만각(급성 골절부위 인접 상부 추체 상연의 연장선과 급성 골절부위 인접 하부 추체 하연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 으로 함. 나. 압박률은 일반 방사선 측면영상(plain X-ray lateral view)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급성 골절부위 인접 상·하부 전방 추체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 로 함. 다. <현행과 동일>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	척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시 압박변형률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이하며, 일반 방사선 측면영상(plain X-ray lateral view)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항 목	제 목	내 용
	(kyphoplasty)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압박변형률 측정방법	- 다 음 - 가. 인접 상·하부 추체에 진구성 골절이 없는 경우 - 인접 상·하부 전방 추체높이의 평균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 - 인접 상부 또는 하부의 전방 추체높이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 나. 인접 상·하부 추체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골절인 경우 - 인접한 상부 또는 하부의 정상추체 전방높이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

○ 치료재료

제 목	내 용
골 결손부에 사용하는 골 대체물질의 인정범위	치근낭적출술, 치근단절제술,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등 시행시 사용한 골대체물질 급여기준(고시 제2018-281호)에 따라 골 대체물질을 최대 3cc(2.5g) 범위내 인정토록 하고 있으나, 골 결손 크기가 비교적 작아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최소 직경 1cm 이상의 골 결손 2. 1cm 미만의 골 결손에 사용은 아래와 같은 경우 인정함 - 아 래 - 가. 협측과 설측골이 모두 소실된 관통(through & through)병소가 있는 경우 나. 근단부 병변과 치주염이 혼재된 경우 다. 치조골결손이 근단부에서 치경부까지 전개되어 치근이 노출된 열개결손(dehiscence defect)의 경우

제 목	내 용
경비적 접근법을 이용한 뇌질환 수술 시 사용하는 Internal Nasal Splint 인정기준	경비적 접근법을 이용한 뇌질환 수술 시 비중격의 연골부 혹은 골부를 골절시키거나 절제한 경우 수술에 사용된 Internal Nasal Splint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4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붙임>

심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항목	제목	내용	항목	제목	내용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신설>	<신설>	<신설>	다245-1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 진단	측두골에 시행하는 다245-1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 진단의 적용기준	「다245-1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진단의 급여기준」 중 측두골은 방사선일반영상진단에서 정보를 얻기 어려우므로, 제3장 제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이 없는 경우에도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을 인정함.	(제개정시유 측두골은 방사선일반 영상진단 으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점을 고려 하여 지침 신설
제6장 마취료			제6장 마취료			
바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 -경추간공 차단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 조영술/ 신경차단술 (Selective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 신경차단술(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 /Block) 또는 경추간공 경막외주사/신경차단술(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Block)시에는 영상자료 에서 다음 소견이 확인되어야 함.	바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 -경추간공 차단	바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 -경추간공 차단(Trans- foraminal	바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경추간공 차단(Transforaminal Epidural Block) 시에는 영상자료에서 다음 소견이 확인되어야 함.	(제개정시유 제3차 상대 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행위 급여 목록 재분류

현행			개정			비고
항목	제목	내용	항목	제목	내용	
	<u>Trans-</u> <u>foraminal</u> <u>Epi duro</u> <u>graphy/</u> <u>Block)또는</u> <u>경추간공</u> <u>경막외주사</u> <u>신경차단술</u> <u>(Trans-</u> <u>foraminal</u> <u>Epidural</u> <u>Injectio/</u> <u>Block)시</u> 영상자료의 세부적용 기준	- 다 음 - 가.~다. <생략>		<u>Epidural</u> <u>Block) 시</u> 영상자료의 세부적용 기준	- 다 음 - 가.~다. <현행과 동일>	

현 행			개 정			비 고
항목	제목	내용	항목	제목	내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46 척추 고정술	척추경 나사 (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 고정술의 급여기준 중 「방출성 (불안정성) 척추골절의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의 측정 방법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중 가. 2) 방출성(불안정성) 척추골절 시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기로 함. - 다 음 - 가. 후만각은 단순 방사선 측면영상 (plain X-ray lateral view)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Cobb’ s 방법에 의한 후만각 (급성 골절부위 인접 상부 추체 상연의 연장선과 급성 골절부위 인접 하부 추체 하연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 으로 함.	자46 척추 고정술	척추경 나사 (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 고정술의 급여기준 중 「방출성 (불안정성) 척추골절의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의 측정 방법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중 가. 2) 방출성(불안정성) 척추골절 시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기로 함. - 다 음 - 가. 후만각은 일반 방사선 측면영상 (plain X-ray lateral view)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Cobb’ s 방법에 의한 후만각 (급성 골절부위 인접 상부 추체 상연의 연장선과 급성 골절부위 인접 하부 추체 하연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 으로 함.	(제개정서류 제3차 상대 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행위 급여 목록 명칭 변경

현행			개정			비고
항목	제목	내용	항목	제목	내용	
		<p>나. 압박률은 <u>단순</u> 방사선 측면영상 (plain X-ray lateral view)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급성 골절부위 인접 상·하부 전방 추체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 로 함.</p> <p>다. <생략></p>			<p>나. 압박률은 <u>일반</u> 방사선 측면영상 (plain X-ray lateral view)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급성 골절부위 인접 상·하부 전방 추체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 로 함.</p> <p>다. <현행과 동일></p>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 복원술 시 골다공증성	<p>척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시 압박 변형률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이하하며, <u>단순</u> 방사선 측면영상(plain X-ray lateral view)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 복원술 시 골다공증성	<p>척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시 압박 변형률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이하하며, <u>일반</u> 방사선 측면영상(plain X-ray lateral view)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제개정사유 제3차 상대 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행위 급여 목록 명칭 변경)

현 행			개 정			비 고
항목	제목	내용	항목	제목	내용	
	압박골절의 압박변형률 측정 방법	- 다 음 - 가.~다. <생략>		압박골절의 압박변형률 측정 방법	- 다 음 - 가.~다. <현행과 동일>	
치료재료			치료재료			
<u>치조골 결손 부위에 사용하는 골 대체물질 (인조골)의 인정범위 (치료재료)</u>	<p>골대체물질의 인정기준(고시 제2007- 139호)에 의거 “치조골 결손부에 골 이식술시 사용한 골 대체물질은 자가골 이식술 없이 합성골만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3cc(2.5g) 범위내 인정” 토록 하고 있으나, 골 결손 크기가 비교적 작아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골 대체물질은 최소한 직경 1cm 이상의 골 결손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되, 1cm 미만의 골 결손이 있다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함.</p> <p>- 아 래 -</p> <p>가. 협측과 설측골이 모두 소실된 관통(through</p>		골 결손부에 사용하는 골 대체물질의 인정범위	<p>치근낭적출술, 치근단절제술,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등 시행시 사용한 골대체물질 급여 기준(고시 제2018-281호)에 따라 골 대체물질을 최대 3cc(2.5g) 범위내 인정토록 하고 있으나, 골 결손 크기가 비교적 작아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p> <p>- 다 음 -</p> <p>1. 최소 직경 1cm 이상의 골 결손</p> <p>2. 1cm 미만의 골 결손에 사용은 아래와 같은 경우 인정함</p> <p>- 아 래 -</p> <p>가. 협측과 설측골이 모두 소실된 관통(through</p>		(제개정서류 심사기준 간 정 합 성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

현 행			개 정			비 고
항목	제목	내용	항목	제목	내용	
		& through)병소가 있는 경우 나. 근단부 병변과 치주염이 혼재된 경우 다. 치조골결손이 근단부에서 치경부까지 전개되어 치근이 노출된 열개결손(dehiscence defect)의 경우			& through)병소가 있는 경우 나. 근단부 병변과 치주염이 혼재된 경우 다. 치조골결손이 근단부에서 치경부까지 전개되어 치근이 노출된 열개결손(dehiscence defect)의 경우	
경비적 접근법을 이용한 뇌질환 수술 시 사용하는 Internal Nasal Splint 인정기준		<u>경비적 접근법을 이용한 뇌질환 수술 시 수술기록지 등을 참조하여 비중격의 연골부 혹은 골부를 골절시키거나 절제한 경우 자100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수술에 사용된 Internal Nasal Splint는 요양급여를 인정함.</u>	경비적 접근법을 이용한 뇌질환 수술 시 사용하는 Internal Nasal Splint 인정기준		<u>경비적 접근법을 이용한 뇌질환 수술 시 비중격의 연골부 혹은 골부를 골절시키거나 절제한 경우 수술에 사용된 Internal Nasal Splint는 요양급여를 인정함.</u>	(제개정서류 심사기준 간 정 합 성 장에 따른 문구 수정